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참고자료

2016년 12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, 김소형 사무관(044-201-1719)
기 획 재 정 부 법인세제과 조만희 과장, 박찬웅 사무관(044-215-4223)
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류중재 과장, 진정용 서기관(044-203-4141)
해 양 수 산 부 수산정책과 최용석 과장, 신동호 사무관(044-200-5427)

제공일 : 12월 29일(총 8매)

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『FTA농어업법』, 『상생협력법』, 『조세특례제한법』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한·중 FTA 여야정 합의('15.11.30)의 핵심사안인 **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**을 위한 **3개 법률 개정안**이 연내 **국회 본회의를 통과**하였음

* '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(FTA 농어업법)'과 '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상생협력법)' 개정안은 '16.12.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'조세특례제한법' 개정안은 '16.12.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
◇ 3개 법률 개정안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① (FTA 농어업법) 상생기금 신설, 조성, 출연방식 및 사용용도 등

② (상생협력법) 상생기금 관리·운용 주체인 재단 명칭을 변경*하고,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 관리·운용 업무 추가

* (현재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→ (변경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③ (조세특례제한법) 법인이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10% 세액공제

◇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하여 **상생기금 출범을 지원**할 예정

○ 또한,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금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업계와 농어업계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

□ 지난 해 한·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**농어촌상생협력기금**(이하 "상생기금") 신설을 위한 관련 **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하였다.

○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『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FTA 농어업법)』과 상생기금의 관리·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『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상생협력법)』 개정안은 '16.12.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,

○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『조세특례제한법』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'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'16.12.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
□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**민간 기업**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농어업·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**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.

try of Today
try and Energy

○ 또한,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·문화·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였다.

□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『FTA 농어업법』, 『상생협력법』 및 『조세특례제한법』 **개정안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FTA 농어업법

○ **(상생기금 설치)**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함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6-12-30 08:45:47

○ **(운용)** 상생기금은 『상생협력법』의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"재단")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·운용되도록 함

○ **(조성)**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

○ **(기금 조성 목표 및 정부 조치)**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이며,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,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,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

○ **(출연 방식)**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

○ **(용도)** 농어업인 자녀 교육·장학,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,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, 농수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,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및 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,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노력함

② 상생협력법

○ **(재단 명칭 변경)** 재단 명에 "농어업"을 추가하여, '대·중소기업협력재단'을 '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'으로 변경함

○ **(재단 사업 추가)** 재단 사업에 '상생기금의 관리·운용'을 추가함

③ 조세특례제한법

○ **(법인세액 공제)**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

□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**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**하여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정부는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기금 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○ 또한, **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**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**다양한 사업을 발굴**하여 동 기금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,

○ 농어업인·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출연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주민 서비스 사업 확대 등 **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실효 이득을 얻는 방향**으로 **사업**을 **발굴**하고, **기금**이 **운영**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정부 관계자는 "상생기금을 매개로 **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활동이 더욱 체계화·활성화**되고, 농어업·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**상생협력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**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6-12-30 08:45:47

참고 1 상생기금 관련 법안 주요 내용

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❑ **(조문 신설) 기금 설치, 조성, 용도** 등을 규정하는 1개 조 신설(제18조의2)

○ **(설치)**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간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**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**(①항)

○ **(운용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**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기금을 **관리·운용**하되, **별도 회계**로 관리(②항)

○ **(조성)**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(③항)

○ **(기금 목표 및 정부 조치)**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 원이며,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,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,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④항)

○ **(출연방식)**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(⑤항)

○ **(용도)** 농어촌주민 **복지증진**, 농어업인 자녀 **교육·장학사업**, **농수산물** 생산·유통·판매 등 **공동협력사업**, 농수산물 **상품권 사업** 등(⑤항)

2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❑ **(재단명칭 변경)** 명칭에 "**농어업**" 추가(제17조제3항, 제20조제1항)

○ (현행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→ (변경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❑ **(재단사업 추가)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·운용** 추가(제20조제2항)

3 조세특례제한법

❑ **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**을 **세액공제 대상**에 **추가**(제8조의3제1항)

○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 시 출연금의 10%를 법인세액 공제

참고 2 상생기금 관련 법 개정안

□ **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**

제18조의2(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)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(이하 "상생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상생기금은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.

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,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,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·장학사업
2. 의료서비스 확충,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3. 정주여건 개선, 마을공동체 활성화, 경관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사업
4. 농수산물 생산, 유통,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등간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협력사업
5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
6. 상생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7.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6-12-30 08:45:47

□ **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**

제20조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) ① 정부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·운용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**조세특례제한법**

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이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또는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협력재단"이라 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

참고 3 상생기금 관련 여야정 합의문

1.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**민간기업, 공기업, 농·수협 등**의 **자발적 기부금**을 재원으로 **매년 1천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**의 **기금을 조성**하여 **농어업**과의 **상생협력 및 지원사업**을 **수행**하도록 한다.

동 기금은 기존 **대중소기업협력재단**에서 **관리·운영**하고,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**세제 등의 인센티브**를 **부여**한다. 이를 위해 **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**과 **「조세특례제한법」**을 **즉시 개정**한다.

만일 **자발적 기금 조성액**이 **연간 목표에 미달**할 경우 **정부**는 그 **부족분을 충당**하도록 **필요한 조치**를 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-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**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·전문가**를 **영입**하여 **별도**의 **본부**를 구성하고, 기금은 **독립회계**로 **운영**한다.

- 재단은 **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, 농어촌 의료·문화 지원 사업, 주거생활 개선사업,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**을 추진한다.

-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**재단 명에 "농어업"을 추가**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, **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**한다.

원성진 / 홍보담당관 / 2016-12-30 08:45:47